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11.



서 민 우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서민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주민과 달리 결혼을 통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생애주기적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4조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
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2058
----------	----------

발의일자: 2022. 11. 4.
발의자: 서민우, 박왕규, 서보영,
박종길, 박정환, 김기열,
김해철

1. 제안이유

일시적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주민과 달리 결혼을 통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생애주기적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 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사. 지원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부모·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예방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한다.

제6조(구성) 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관계자
3. 학계·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관계자
5.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

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